

원료·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·처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공고

공 고

원료·제조물을 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하는 사업장은 화학 3법* 뿐만 아니라 「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, '24.1.27)에 따라 안전·보건 확보 등의 법정의무 통합 이행이 필요합니다.

* 「화학제품안전법」,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 및 「화학물질관리법」

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산업계 이행 지원을 위해 “원료·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법령 이행기반 구축사업”을 시행하고 있으며, 본 사업에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6. 5.
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

1. 신청기간 : '24. 6. 5(수) ~ 모집 완료 시 마감
2. 제출서류 : 안내문 내 제출서류 참고
3. 접수 및 문의처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녹색화학센터
KOTITI시험연구원 환경안전정책팀
- (E-mail) yel@kitech.re.kr, yj_choi@kotiti.re.kr
- (전화) 041-589-8368, 02-6191-6168
4. 세부내용 : 안내문 참고

원료·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·처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

- 원료·제조물을 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하는 사업장은 **화학 3법*** 뿐만 아니라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, 「중대재해처벌법」)」(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, '24.1.27)에 따라 안전·보건 확보 등의 **법정의무 통합 이행**이 필요합니다.
* 「화학제품안전법」,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 및 「화학물질관리법」
-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**조기 안착과 산업계 이행 지원**을 위해 “원료·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법령 이행기반 구축 사업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「원료·제조물을 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하는 사업장」을 대상으로 관련 **법률 교육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·처방 컨설팅**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□ 사업명 :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·처방 컨설팅

□ 사업배경 및 목적
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('22.1.27) 및 유예기간 종료('24.1.26)에 따라 50인 미만의 원료·제조물을 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하는 사업장은 안전·보건 확보 등의 의무이행 필요

<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(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) >	
① 안전·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*	② 관계법령 의무이행 및 점검
③ 의무교육 실시 및 점검	④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

※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8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

- 또한 원료·제조물을 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하는 사업장은 「화학제품안전법」,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 및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, 화학 3법)의 **법정의무사항 이행**이 요구됨
- 이에 원료·제조물을 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령 이행 실태 및 대응현황을 진단하고 교육을 실시하여, 사업장 스스로 중대시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

□ 지원대상

- 화학 3법에 해당하는 원료·제조물을 생산·제조·판매·유통하는 중소기업*
(60개社)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따른 기업

□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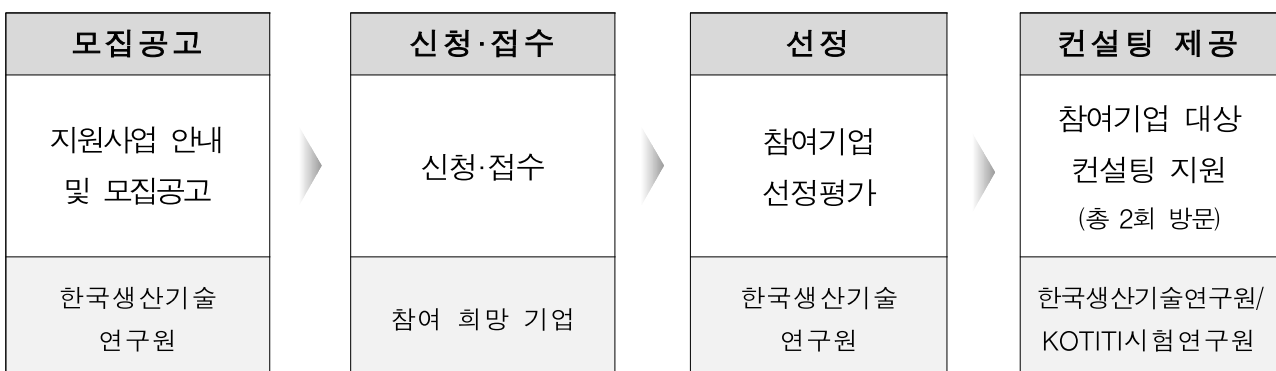
○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정보 제공
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주요 내용, 화학 3법 중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령 소개, 국내·외 중대시민재해 사례, 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방법 등의 교육 및 정보 제공

○ 사업장의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진단·처방
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및 안전·보건 관계 법령(화학 3법)에 따른 안전·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관계 법령 의무사항 이행 등 진단·처방
- (안전·보건관리체계)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❶인력배치 및 예산 편성, ❷유해·위험요인 점검·보고·신고·개선 절차, ❸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조치, ❹문서의 기록·보존 등
- (안전·보건 관계 법령 의무사항) 법정교육 실시 여부 확인·보고·필요조치 등 화학 3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□ 지원절차



※ 국내 중소기업 중 기업규모, 지원 시급성, 기업의 법령 대응 수준 및 대응 의지 등을 검토하여 기업을 선정하며, 컨설팅 세부절차는 별첨자료 참고

□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'24. 6. 5(수) ~ 모집 완료 시 마감

○ 신청서류 : 참여신청서 1부 등

- (유의사항) 중소기업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,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급 일자 및 최신본 여부 확인하여 제출

구분	신청서류	비고
1	참여신청서	[붙임 1]
2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[붙임 2]
3	중소기업 확인서	정부기관 발급본
4	사업자등록증명	
5	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	
6	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하는 서류(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)	-

○ 제출방법 : E-mail 접수(yel@kitech.re.kr, yj_choi@kotiti.re.kr)

□ 문의처

○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예원 연구원(041-589-8373, yel@kitech.re.kr)

○ KOTITI시험연구원 최연진 주임연구원(02-6191-6168, yj_choi@kotiti.re.kr)

별첨

컨설팅 세부 절차 및 내용

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진단·처방 컨설팅 세부절차 및 내용

○ 화학 3법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이행 여부 진단·처방과 교육·정보 제공

- 기업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 확보의무(화학 3법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른 의무사항) 이행 여부 진단·처방 및 교육·정보 제공

추진 단계	수행 내용	각 수행내용별 담당자		
		주관기관	수행기관	참여기업
STEP 1	· 사전정보조사 - 사전정보조사지는 전자우편(이메일) 송부 및 작성 방법 안내	-	-	○
↓				
STEP 2	· 화학물질 인벤토리(목록) 제공 및 작성방법 안내 - 화학 3법에 대한 기업의 의무이행 현황 조사 자료로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 정보 작성 양식 제공/안내	-	○	-
↓				
STEP 3	· 화학물질 인벤토리(목록) 작성 - 참여기업은 사업장 취급 화학물질 정보를 화학물질 인벤토리 양식에 작성 및 제출	-	-	○
↓				
STEP 4	· 화학물질 인벤토리(목록) 분석 -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통한 화학 3법 이행 의무사항 분석	○	○	-
↓				
STEP 5 (1차 방문)	· 컨설팅 사업소개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및 원료·제조물분야 중대시민 재해 소개 ·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이행실태 및 대응현황 진단 - 화학 3법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안전·보건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의 화학 3법 이행 여부 파악	-	○	○
↓				
STEP 6	· 사업장 진단보고서 작성 - 화학물질 인벤토리 분석 결과와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이행실태 및 대응현황 진단 결과를 통한 사업장 진단보고서 작성	-	○	-
↓				
STEP 7 (2차방문)	· 사업장 진단보고서 검토 및 제공 - 사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에 따라 결과자료 검토 후 참여기업에 제공	○	○	○
참여기업 제공 컨설팅 결과물		- 사업장 진단보고서 1건		